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0. 10. 28.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○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 외 6인(정창근,안대국,박종길,이신자,김인호,안영란)

○ 발의일자: 2020. 10. 14.

○ 회부일자: 2020. 10. 16.

○ 상정 및 의결: 제27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(2020. 10. 28.)

2. 개정이유

○ 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관련하여 위탁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음을 명시(안 제14조제2항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(전문위원: 박성우)

○ 지난 2019년 5월 개정된 후, 현재 시행 중인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(제4조의3 제5호)」에 따르면,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(재위탁 시, 보고 포함)에는 <민간위탁기간>을 표기하도록 규정.

○ 상기 조례에 따라 위탁 동의안에 <민간위탁기간>을 표기하려면 먼저 해당 위·수탁 사무를 규정하는 개별 자치법규에 <위탁기간>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야 함.

○ 한편,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<월배체육공원 내 체육시설 및 송현 체육센터 재위탁 보고건>에 집행부는 <위탁기간>을 3년으로 표기.

○ 그러나 동 시설 위탁 사무를 규정하는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에는 <위탁기간 (예: 3년으로 한다)> 관련 규정이 없음.

○ 결국 상기 시설들의 재 <위탁기간>을 3년으로 하겠다는 집행부의 동 보고의 내용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으며, 그 내용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회가 제대로 심의할 수없는 상황이 발생함.

○ 개정안은 상기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집행부의 <재위탁 보고 건>을 의회가 원활히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"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(안 제14조제2항)"는 규정을 신설.

○ 따라서 동 조례 개정 취지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이견은 없음.

□ **집행부의 의회 의안 제출 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 의견**

○ 집행부가 <민간위탁 보고의 건>을 제출하고 의회가 원활히 심의하려면, 먼저 관련 조례를 정비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아, 이처럼 의회에 2개 안건이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되고, 이로 인해 의회로 하여금 이들 2개 안건을 모두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안 심의권(한)을 제약하게 됨.

○ 따라서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(예: 조례안 또는 동의안을 예산안과 같은 회기에 동시 제출)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는 특히 유념할 필요가 있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"특이사항 없음"

6. 토론요지: "특이사항 없음"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